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근거 신설 〉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844호)

2025. 11.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근거 신설	2

I. 제안경위

2025년 6월 16일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 기준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 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급 수준은 2024년 기준 월 최저임금의 약 24%에 불과하고,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정 심화 등 청년층이 직면한 구조적 취약성에 비추어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부족하므로 최소한의 소득 보장 장치로서 지원금 수준을 상향하고 이를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지급 수준을 해당 연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명시하여 청년층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Ⅲ. 검토의견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8조의5(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직 중인 청년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금(이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u> <u>②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해당 연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월(月) 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u> <u>③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급 대상·금액·기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나. 검토의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준비 청년의 생계안정·구직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생애 1회 지원)를 대상으로 2019년 최초 지급된 이후 현재 고용노동부 소관 재정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구직촉진수당”으로 통합·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동 지원금은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있으나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정 심화 등 청년층이 직면한 구조적 취약성에 비추어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부족하므로 최소한의 소득 보장 장치로서 지원금 수준을 상향하고 이를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지급 수준을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재정사업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여, 청년층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최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소득보전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취지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우선,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유사한 구직촉진수당 등이 현행 법률·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규정함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동 수당은 중위소득 60% 이하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취업지원자에게 지원되는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취지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다.

1.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2.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3.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다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한다)인 사람은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이어야 한다.
- ② 제1항제3호의 가구단위 및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의 구체적인 범위와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이 있다.

1. 제6조에 따른 수급 요건을 갖출 것
2.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내의 범위에서 최저 생계비 및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일 것
3.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6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4.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동시장의 여건,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나 같은 항 제4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단서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하 생략)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청년의 구직비용 절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두고 관련 지원금 지급이 가능¹⁾함.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년고용법」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근거를 별도 신설하는 것은 「구직자 취업촉진법」상 구직촉진수당²⁾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보임.

물론 개정안은 청년만을 대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취업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지급대상·금액·기간·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별도로 규정하기 때문에 현행 구직촉진수당과 달리 운영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저소득 구직청년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업부조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때, 그 지급수준을 최저임금과 연동하기보다는 실제 구직활동에 드는 소요비용, 생계비 수준,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1) 일례로 서울특별시는 다음과 같은 조례를 통해 청년 수당(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⑦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자문회의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하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② 구직촉진수당은 금전으로 지급한다.
③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 및 확인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히, 개정안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면서 지급 수준을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사업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정책의 지속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지급수준을 법률에 명시할 경우 향후 경제 여건 및 재정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참고로, 대부분의 유사 제도(예: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등)는 관련 위원회 심의 또는 고시를 통해 지급액을 조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³⁾, 법률에 구체적인 지급비율을 명시한 사례는 드문바, 지급수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정책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봄.

한편, 관계부처 의견으로서, 고용노동부 및 기획재정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구직촉진수당) 적정수준에 대해 청년고용률, 경기여건 등을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하나 최저임금과의 기계적 연동은 곤란하며, 이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이 규정된바, 추가 규정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년도전지원사업 등의 재정사업은 관련 사업 고시나 지침 등으로 지원금이 결정됨.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지급수준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을 결정한다.

②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은 월(月) 단위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전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539

참고 1

「구직자 취업촉진법」 상 청년층 구직촉진수당 지원근거

제6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다.

1.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2.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3.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다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한다)인 사람은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이어야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가구단위 및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의 구체적인 범위와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이 있다. → 취업 경험 有 + 저소득 청년 포함

1. 제6조에 따른 수급 요건을 갖출 것
2.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내의 범위에서 최저 생계비 및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일 것
3.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6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4.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동시장의 여건,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나 같은 항 제4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단기간 취업경험 또는 無 + 저소득 청년 포함
2.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단서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저소득 청년

참고 2

그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 · 지급 추진경과

- 취업성공패키지 內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17.7월)
 - (지원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만 34세 이하)으로 3단계(알선 단계) 진행 중인 자에 대해 지원(月 30만원×3개월)
 - (지급요건) 상호의무협약 수립 후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수행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 ('19년)
 - (도입배경) 20대 후반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구직경쟁 격화, 구직 청년 '취업준비 비용' 경감을 위해 도입
 - (지원대상)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생애 1회 지원)
 -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OECD 전일제-시간제 구분기준)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지원내용) 月 50만원 × 6개월,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 국민취업지원제도 內 구직촉진수당 신설 ('21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內 청년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

< 유관사업 정비 및 통합 >

기존('20년)	국민취업지원제도('21년)	비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활동 청년에게 월 50만원(6개월) 지원	I 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 요건심사형(의무지출)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 취업경험 요건: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 선발형(재량지출) 청년특례 중위소득 120% 이하 중 선발 비경활인구 중 일정기준에 따라 선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선발형 중 청년 특례에 통합
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층 중위소득 60% 이하 + 특정취약계층* *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 청년: 소득기준 없음 ■ 중장년층: 중위소득 60 ~ 100%	II 유형: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 특정계층 *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 청년: 기존과 동일 ■ 중장년층: 기존과 동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II 유형에 통합·정비